

아산시 고시 제2021-485호

## 아산시 도시관리계획(온양온천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아산시 온천동 146-1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☎041-540-249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1. 12. 27.

아 산 시 장

- 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 
: 붙임
- 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 
: 게재생략